

| | |
|-------|--------|
| 의안번호 | 제 82 호 |
| 의 결 | 년 월 일 |
| 연 월 일 | (제 회) |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5일 |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 |
|-----|----|
| 의 안 | 82 |
|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5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탄소중립 비전, 목표, 이행체계(안 제6조 ~ 제8조)
-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 운영(안 제9조 ~ 제19조)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시책(안 제22조 ~ 제33조)
-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안 제34조 ~ 제38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함은 물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도민의 민

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6.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직접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의 개발 및 녹색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가정과 학교,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도지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충청북도를 조성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충청북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등)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이행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해당 시·군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대신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 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의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청년,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총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용 시책 등

제20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중립 도시의 운영 및 확산) 도지사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로·교통·환경기초시설 등 공공기반시설물을 비롯하여

공장,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4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준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녹색기술·녹색산업 등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하며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비전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도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대) 도지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농·축산업의 전환) 도지사는 농작물의 재배, 가축 사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축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자원순환의 활성화)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며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도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31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지역 물관리 사업) 도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도지사는 관할 구역이 법 제48조 제1항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34조(협동조합의 활성화)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지원이나 사무처리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 ·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산 · 소비 ·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과 소속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한다. 다만, 설립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도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연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0조(포상) 도지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시책 발굴·추진 및 녹색생활 실천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선정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관련법령 발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⑥ ~ ⑦ (생략)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제출·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③ ~ ⑦ (생략)

-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 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 ③ ~ ④ (생략)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3.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7.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국외 진출
8.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실천연대는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 ③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
 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5.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
- ④ 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⑤ 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탄소중립시·도계획(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말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④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축산·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 ④ ~ ⑨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2. 비용 발생 요인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조례안 제7조)
-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안 제9조)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시책 추진(조례안 제20조~제33조)
-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 추진(조례안 제34조~제37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조례안 제38조)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조례안 제39조)
- 포상(조례안 제40조)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조례안 제9조(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운영)
- 조례안 제20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 조례안 제22조(탄소중립 도시의 운영 및 확산)
- 조례안 제23조(신·재생에너지 전환)
- 조례안 제24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 조례안 제25조(녹색기술·녹색산업 등의 육성·지원)
- 조례안 제27조(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대)
- 조례안 제28조(농·축산업의 활성화)
- 조례안 제29조(자원순환의 활성화)
- 조례안 제30조(탄소흡수원 확대)

- 조례안 제32조(지역 물관리 사업)
- 조례안 제3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 조례안 제34조(협동조합의 활성화)
- 조례안 제3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 조례안 제3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 조례안 제3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 조례안 제40조(포상)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운영 : 외부위원 25명 정도, 연 2회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 * '2023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기내시' 근거[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3854(2022.9.16.)호]
- ※ 이 외의 본 조례와 관련된 56개 사업은 타 법령에 의해 기 추진중으로 신규예산 수반 없음
- 추 계 결 과 : 18.2억 원(국비 9, 도비 9.2)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운영 : 0.2억 원(도비 0.2)
 - 참석수당 : $(100\text{천원} \times 25\text{명} \times 1\text{회}) \times 1\text{개년('22년)} = 2,500\text{천원}$
 - $(100\text{천원} \times 25\text{명} \times 2\text{회}) \times 4\text{개년('23~'26년)} = 20,000\text{천원}$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 18억 원(국비 9, 도비 9)
 - 운영·사업비 : $(200,000\text{천원} \times 1\text{식}) \times 1\text{개년('22년)} = 200,000\text{천원}$
 - $(400,000\text{천원} \times 1\text{식}) \times 4\text{개년('23~'26년)} = 1,600,000\text{천원}$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참고

6. 작성자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백만원)

| 구 분 | 계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년도 (2024년) | 4차년도 (2025년) | 5차년도 (2026년) | |
|------------------------|-----------|-----------------|-----------------|-----------------|-----------------|-----------------|---------|
| 세 입 | 5,378,986 | 1,124,580 | 1,303,179 | 1,228,948 | 1,015,536 | 706,743 | |
| (기존)56개 사업 | 5,377,163 | 1,124,377 | 1,302,774 | 1,228,543 | 1,015,131 | 706,338 | |
| (신규)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 설치·운영 | 23 | 3 | 5 | 5 | 5 | 5 | |
| (신규)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 1,800 | 200 | 400 | 400 | 400 | 400 | |
| 세 출 | 5,378,986 | 1,124,580 | 1,303,179 | 1,228,948 | 1,015,536 | 706,743 | |
| (기존)56개 사업 | 5,377,163 | 1,124,377 | 1,302,774 | 1,228,543 | 1,015,131 | 706,338 | |
| (신규)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 설치·운영 | 23 | 3 | 5 | 5 | 5 | 5 | |
| (신규)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 1,800 | 200 | 400 | 400 | 400 | 400 | |
| 재원조달 | 5,378,986 | 1,124,580 | 1,303,179 | 1,228,948 | 1,015,536 | 706,743 | |
| 보조금 (국비), 기금) | 계 | 1,934,942 | 403,321 | 499,024 | 467,421 | 365,207 | 199,969 |
| | 기존사업 | 1,934,042 | 403,221 | 498,824 | 467,221 | 365,007 | 199,769 |
| | 신규사업 | 900 | 100 | 200 | 200 | 200 | 200 |
| 도비 (지방세) | 계 | 550,968 | 124,404 | 133,398 | 122,999 | 97,702 | 72,465 |
| | 기존사업 | 550,045 | 124,301 | 133,193 | 122,794 | 97,497 | 72,260 |
| | 신규사업 | 923 | 103 | 205 | 205 | 205 | 205 |
| 시군비 | 1,135,005 | 244,615 | 273,504 | 264,940 | 203,697 | 148,249 | |
| 기타 (자부담) | 1,758,071 | 352,240 | 397,253 | 373,588 | 348,930 | 286,060 | |